## 율령 반포 삼국, 왕의 법을 나라 안에 선포하다

373년

## 1 개요

율령(律令)이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이다.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되는 율령을 통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삼국의 율령 반포는 삼국이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 2 율령이란

'율(律)'은 현재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령(令)'은 지금의 행정법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다. 예를 들면 행정 관청들의 역할과 그곳에서 일하는 관원들의 위계, 직무, 정원, 인사규정 등 행정 관료제를 규정한 것이라든가, 백성들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취하는가 등의 통치 방법 등이 '령'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율령은 중국 왕조에서 발전한 법제이다. 중국 왕조들에서는 율령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편찬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갔는데, 삼국은 중국 왕조들의 율령을 참조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나라 안에 공표하였다. 따라서 삼국의 율령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통치 방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정치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정·반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율령 반포 이전의 상황

삼국은 각각 5개 내지는 6개의 큰 정치 집단인 부(部)의 연합·연맹체로서 건국되었다. 세력이 가장 강한 부의 수장이 국가 전체의 대표인 왕이 되었지만, 각 부들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왕이 초월적인 권력자가 될 수는 없었으며, 자신이 속한 부 이외의 다른 부들의 내부 통치에 강력하게 간섭하기가 힘들었다. 비록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국가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각 부는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각 부의 내부 일에 간섭하지는 못했다. 하나의 나라가 다시 몇 개의 자치적인 통치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삼국 초기의 국가 체제에서는 나라의 통일된 법과 제도가 없었다. 중대한 범죄와 같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부의 유력 지배자들이 모이는 상설적인 회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처분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 사항을 유력 지배자 전체의 이름으로 국내에 공표하고 집행하였다.

관련사로 관련사로 국정 운영 역시 5부 내지는 6부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나라 안이 몇 개의 지역 단위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나라였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지배자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었고, 왕과 국가에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삼국 초기의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력을 집중하기 힘들고 분열하기 쉬운 문제가 있었다.